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 가 회 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홍남기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가회계법」 개정('22.1.1. 시행)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도입됨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·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

- 1)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
- 2)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
- 3)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회계법 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의2호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의2호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
2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
3.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
4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<국가회계법 시행령>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) ① ~ ② (생략)	제5조 (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의2호 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의2호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 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1.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</u> <u>2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</u> <u>3.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</u> <u>4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</u>
<u>③ ~ ⑤ (생략)</u>	<u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433